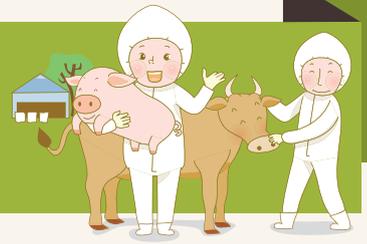


#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

## (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)



감액 및 경감 내용		기 준
【양성농장】(구제역, AI, 돼지열병, 브루셀라병)		20% 감액
【추가 감액 기준】(양성농장에 한함)		
• 축산업미등록·미허가		10% 감액
•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		초과 사육분 전액 미지급
• 계열화사업자 방역교육 및 점검 미 실시 교육 및 점검결과 미통지		각 5% 감액 5% 감액
신 고	• 의심축 신고 지연 (1~4일)	20% 감액
	• 의심축 신고 지연 (5일 이후)	40% 감액
	• 의심축 미신고	60% 감액
신 고	• 외국인 근로자 예방교육·소독 등 미 조치	10% 감액
	• 외국인 근로자 단순 미신고	10% 감액
	• 미신고가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	60% 감액
신 고	• 해외 입국 시 질문·검사·소독 등 불이행	10% 감액
	• 불이행이 질병발생과 관련 있는 경우	60% 감액
발생시 조치	• 검사·주사·약물목욕·면역요법·투약 등 명령 미 이행	5% 감액
	•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	40% 감액
	• 역학 조사 거부·방해·회피	5% 감액
	• 소독 미 실시	5% 감액
	• 이동제한 미 준수	5% 감액
	• 일시 이동제한 위반	5% 감액
	• 살처분 명령 불이행	5% 감액
	• 소각·매몰 또는 소독 등 명령 위반	5% 감액
	• 오염물건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 위반	5% 감액
	• 최근 2년 이내 2회 재발생	20% 감액
• 최근 2년 이내 3회 재발생	50% 감액	
• 최근 2년 이내 4회 재발생	80% 감액	
감액의 경감	• 질병관리 1등급 시	10% 경감
	• 질병관리 2등급 시	5% 경감
	• 조기 신고농가(증상 발현일 또는 나타나기 전)	10% 경감
감액의 경감	• 우수방역농가로 추천자	10% 경감

\* 양성농장 폐기물건 보상(평가액의 40% → 80%)

